

+
-

진주국토 관내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안]

(작성요령 포함)

2014. 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I.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14-299호, 2014.05.23)」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당해 용역사업 수행에 적합하도록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서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우리 사무소에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이상)·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가. 우리 사무소의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사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2013.05.02, 국토교통부훈령 제176호) 제4조 4항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는 제외하며,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집행계획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이미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관련하여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까지로 한다.
9.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중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기술자의 참여동의서(자필서명)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인 동의서를 미 제출한 해당 참여기술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1.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책임 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참여기술자 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2. 평가기준의 배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로 같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동 게시로 같음한다.

13.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평가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14. 본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14-299호, 2014.05.23)」에 따른다.

15. 본 평가기준은 관련법령 개정 등 변경시 까지 적용한다.

II.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참여기술자 평가

가.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건설기술자경력 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로서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참여하였을 경우 해당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참여기술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자 1인, 기술지원기술자 3인(도로 및 공항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토목구조분야)** 등 총 5인으로 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관리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라. 해당분야의 경력평가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발주청(공고일 기준) 및 해외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발주청”이외의 민간건설업체 또는 민간인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주건설관리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토목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 력 종 류	인정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지방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이하 “행복청”),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CM), 시공,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지방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행복청, 광역자치단체, 국토해양부산하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설계 경력 ○ 한국도로공사를 제외한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CM), 시공,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 업무 또는 관리자경력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기관이외의 국가,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4개 공사 이외)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감리, 발주청의 공사감독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 시공 및 설계 경력 ○ 지하철, 철도, 활주로 건설공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감리, 발주청의 공사감독관련업무 경력 ○ 도로건설분야 계획·시험·검사·비상주감리 경력 ○ 도로분야 연구업무·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 경력 ○ 건설관련업체의 도로건설공사 관리자 경력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분야 경력, 해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토목분야로 참여한 경력(단, 확인서류에 구체적으로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가 명시된 경력에 한함) ○ 도로분야(교량, 터널 포함) 유지관리 경력 	60%

※ 모든 경력은 확인서류에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3) 기술지원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설계, 도로분야 시공·감리·감독 관련·계획·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 인정한다.

여기서, 해당분야라 함은 :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우 도로분야

전문분야가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인 경우 토목분야

※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마.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부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자의 직부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자의 직부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부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책임, 시공, 검측) 건설사업관리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공사감독, 공사관리

사.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 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 증명서” 주요경력/참여기간(참여일) 중 “참여일”로 계산하며, 건설기술자가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다”목 적용>

책임 정도	현장 대리인	안전· 환경 관리자 · 공사감독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 용역감독	참여 기술자 일반감독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상주 기술자	기술 지원 기술자
건설사업 관리 참여일	1.04 (1.3×0.8)	0.88 (1.1×0.8)	1.04 (1.3×0.8)	0.88 (1.1×0.8)	0.8 (1.0×0.8)	1.3	1.1	1.0

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일 경우

$$1990.01.01. \sim 1990.06.30. (80일) \Rightarrow 80일 \times 1.3(\text{보정계수}) = 104일 \text{ 적용}$$

2) 건설기술자가 1)의 보정계수 중 1.1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책임정도 및 정의>

건설공사업무	책임정도	정 의
시공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한 경우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경우
시공,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참여기술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자가 아닌 경우
설계, 건설사업관리(*)	사업책임기술자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총괄업무를 수행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분야별 책임업무를 수행한 경우
	참여기술자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에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자의 위임을 받아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한 경우
	상주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원 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리감독	용역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관리감독 하는 경우
	공사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를 관리감독 하는 경우
	일반감독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

아.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 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 기술지원기술자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은 당해분야에 한하여 적용한다.

※ 1주 : 일 7시간 교육 × 5일 = 35시간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발표)

1)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면접 일정 등은 별도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진주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하며, 평가 당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불참할 경우 면접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면접 평가는 업무관리능력평가서 및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평가하며, 업무수행능력, 자질 검증, 청렴도 등을 세부항목별 배점 범위내에서 [Ⅲ.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배점표]에 따라 상대평가한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출 평가한다.

※ 면접평가는 우리 소에서 제시한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기술 및 업무관리 능력평가서 및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면접평가 후 별도기준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지방청, 국토관리사무소),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 정부투자기관,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부분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정)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 1)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2)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한 철도(일반·고속) 건설공사 관리용역에 참여한 경우 해당실적의 60%를 인정한다.

나. 용역의 수행실적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경우에도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해외건설협회에서 실적을 증빙한 것에 한한다.

라. 최근 3년간 실적계산 예시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03. 01, 준공일 2013.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05. 0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05.
0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
[2011. 05. 0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03. 02, 준공예정일 2014. 12. 31
일 경우 입찰공고일 2014. 05. 01.이면, 적용기간은 2012. 03. 02.부터
2014. 05. 01.까지 금액계상
[2012. 03. 02.부터 2014. 05. 0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3. 신용도 평가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건설사업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나. 부실별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 부실별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 ,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 20점 이상 : 5.0점

다. 재정상태 건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활용실적

-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2) 타인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5. 교체빈도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자의 교체건수를 건설기술자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자수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으로 “완료” 철수된 경우에는 진단서에 의한 요양기간 및 입원기간 동안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6. 가·감점사항

가.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자

1)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내(용역집행계획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적용하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서 발주청으로부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 건설관리기술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참여기간)
- 공사비 절감현황 (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 발주청 확인(기관명·날인, 발급자·날인, 연락처)

나.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1) 용역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와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감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기술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2) 부패행위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표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자	(1)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60 [2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당해공사 규모	설계,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1	10	9	8	7		
	(나) 직무 분야실적	9	1) 설계,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6점) :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자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자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4	4.8	4.2	3.6	
2)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3점) :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자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자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3	2.7	2.4	2.1	1.8			
(다) 교육 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자	(2)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3]	○ 토목분야,																																												
	(가) 해당 분야경력	13	<table border="1"> <thead> <tr> <th>당해공사규모</th> <th colspan="5">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 월)</th> </tr> </thead> <tbody> <tr> <td>300억원이상</td> <td>48이상</td> <td>48미만 42이상</td> <td>42미만 36이상</td> <td>36미만 30이상</td> <td colspan="2">30미만</td> </tr> <tr> <td>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td> <td>36이상</td> <td>36미만 28이상</td> <td>28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2이상</td> <td colspan="2">12미만</td> </tr> <tr> <td>100억원미만</td> <td>24이상</td> <td>24미만 18이상</td> <td>18미만 12이상</td> <td>12미만 6이상</td> <td colspan="2">6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3</td> <td>12</td> <td>11</td> <td>10</td> <td colspan="2">9</td> </tr> </tbody> </table>						당해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 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3	12	11	10	9						
당해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 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3	12	11	10	9																																										
(나)직무분야실적		9	○ 설계,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6점) :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 colspan="5">점 수(단위: 년)</th> </tr> </thead> <tbody> <tr> <td>특급기술자</td> <td>12이상</td> <td>12미만 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 colspan="2">6미만</td> </tr> <tr> <td>고급기술자</td> <td>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 4이상</td> <td colspan="2">4미만</td> </tr> <tr> <td>중급기술자</td> <td>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 4이상</td> <td>4미만 2이상</td> <td colspan="2">2미만</td> </tr> <tr> <td>점 수</td> <td>6</td> <td>5</td> <td>4</td> <td>3</td> <td colspan="2">2</td> </tr> </tbody> </table>						등 급	점 수(단위: 년)					특급기술자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기술자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자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	5	4	3	2						
등 급	점 수(단위: 년)																																														
특급기술자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기술자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자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	5	4	3	2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 colspan="5">점 수(단위: 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특급기술자</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 colspan="2">2미만</td> </tr> <tr>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 colspan="2">1.8</td> </tr> <tr> <td rowspan="2">초급기술자</td> <td>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 colspan="2">2미만</td> </tr> <tr> <td>3.0</td> <td>2.7</td> <td>2.4</td> <td colspan="2">2.1</td> </tr> <tr> <td rowspan="2">중급기술자</td> <td colspan="2">3이상</td> <td colspan="3">3미만</td> </tr> <tr> <td colspan="2">3.0</td> <td colspan="3">2.7</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등 급	점 수(단위: 년)					특급기술자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초급기술자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중급기술자	3이상		3미만			3.0		2.7
등 급	점 수(단위: 년)																																														
특급기술자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초급기술자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중급기술자	3이상		3미만																																												
	3.0		2.7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자	(3) 기술 지원기술자	[10]	○ 도로 및 공항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토목구조분야 등 3인 평가하여 합산																																			
	(가) 등급	3	<table border="1"> <thead> <tr> <th>당해공사규모</th> <th colspan="2">등 급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총공사비 300억원이상</td> <td>특급기술자</td> <td>고급기술자 이하</td> </tr> <tr> <td>3</td> <td>2</td> </tr> <tr> <td rowspan="2">총공사비 300억원미만</td> <td>고급기술자 이상</td> <td>중급기술자 이하</td> </tr> <tr> <td>3</td> <td>2</td> </tr> </tbody> </table>	당해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이하	3	2																						
	당해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이하																																				
	3	2																																				
(나) 해당 분야경력	6	<table border="1"> <thead> <tr> <th>당해 공사규모</th> <th colspan="5">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년)</th> </tr> </thead> <tbody> <tr> <td>1,000억원 이상</td> <td>15이상</td> <td>15미만 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td> </tr> <tr> <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13이상</td> <td>13미만 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td> </tr> <tr> <td>500억원미만 300이상</td> <td>11이상</td> <td>11미만 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td> </tr> <tr> <td>300미만</td> <td>9이상</td> <td>9미만 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td> </tr> <tr> <td>점수</td> <td>6</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body> </table>	당해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당해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 교육 훈련	1	<p>○ 기술지원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 (0.5점), 기사 (0.3점), 산업기사 (0.1점) 																																				
(4) 면접 (발표)	6	<p>○ 면접은 참여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하며 참여업체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용역비</th> </tr> <tr> <th>20억원 미만</th> <th>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th> <th>30억원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td> <td>4점</td> <td>4.5점</td> <td>5.0점</td> </tr> <tr> <td>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자</td> <td>2점</td> <td>1.5점</td> <td>1.0점</td> </tr> </tbody> </table> <p>※ 면접에 불참할 경우 면접점수 "0"점 처리</p>	구분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4점	4.5점	5.0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2점	1.5점	1.0점																					
구분	용역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4점	4.5점	5.0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2점	1.5점	1.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 유사용역수행실적	[10]	<p>○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p> <p>-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 1.0 +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인정)</p> <p>※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적용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491 846 1385 1832"> <thead> <tr> <th data-bbox="491 846 703 943">당해공사규모</th> <th colspan="5" data-bbox="703 846 1385 943">감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91 943 703 1055">3,000억원이상</td> <td data-bbox="703 943 842 1055">120이상</td> <td data-bbox="842 943 981 1055">120미만 110이상</td> <td data-bbox="981 943 1120 1055">110미만 100이상</td> <td data-bbox="1120 943 1259 1055">100미만 90이상</td> <td data-bbox="1259 943 1385 1055">90미만</td> </tr> <tr> <td data-bbox="491 1055 703 1167">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td> <td data-bbox="703 1055 842 1167">100이상</td> <td data-bbox="842 1055 981 1167">100미만 90이상</td> <td data-bbox="981 1055 1120 1167">90미만 80이상</td> <td data-bbox="1120 1055 1259 1167">80미만 70이상</td> <td data-bbox="1259 1055 1385 1167">70미만</td> </tr> <tr> <td data-bbox="491 1167 703 1279">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td> <td data-bbox="703 1167 842 1279">80이상</td> <td data-bbox="842 1167 981 1279">80미만 70이상</td> <td data-bbox="981 1167 1120 1279">70미만 60이상</td> <td data-bbox="1120 1167 1259 1279">60미만 50이상</td> <td data-bbox="1259 1167 1385 1279">50미만</td> </tr> <tr> <td data-bbox="491 1279 703 1391">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 <td data-bbox="703 1279 842 1391">60이상</td> <td data-bbox="842 1279 981 1391">60미만 50이상</td> <td data-bbox="981 1279 1120 1391">50미만 40이상</td> <td data-bbox="1120 1279 1259 1391">40미만 30이상</td> <td data-bbox="1259 1279 1385 1391">30미만</td> </tr> <tr> <td data-bbox="491 1391 703 1503">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 <td data-bbox="703 1391 842 1503">40이상</td> <td data-bbox="842 1391 981 1503">40미만 30이상</td> <td data-bbox="981 1391 1120 1503">30미만 25이상</td> <td data-bbox="1120 1391 1259 1503">25미만 20이상</td> <td data-bbox="1259 1391 1385 1503">20미만</td> </tr> <tr> <td data-bbox="491 1503 703 1615">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td> <td data-bbox="703 1503 842 1615">30이상</td> <td data-bbox="842 1503 981 1615">30미만 25이상</td> <td data-bbox="981 1503 1120 1615">25미만 20이상</td> <td data-bbox="1120 1503 1259 1615">20미만 15이상</td> <td data-bbox="1259 1503 1385 1615">15미만</td> </tr> <tr> <td data-bbox="491 1615 703 1727">100억원미만</td> <td data-bbox="703 1615 842 1727">20이상</td> <td data-bbox="842 1615 981 1727">20미만 15이상</td> <td data-bbox="981 1615 1120 1727">15미만 10이상</td> <td data-bbox="1120 1615 1259 1727">10미만 5이상</td> <td data-bbox="1259 1615 1385 1727">5미만</td> </tr> <tr> <td data-bbox="491 1727 703 1832">점수</td> <td data-bbox="703 1727 842 1832">10</td> <td data-bbox="842 1727 981 1832">9</td> <td data-bbox="981 1727 1120 1832">8</td> <td data-bbox="1120 1727 1259 1832">7</td> <td data-bbox="1259 1727 1385 1832">6</td> </tr> </tbody> </table>						당해공사규모	감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10	9	8	7	6
당해공사규모	감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10	9	8	7	6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 입찰 참가제한 업무정지	[15] 7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부실 별점	5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 상태 건설도	3	○ 재정상태 건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table border="1"> <thead> <tr> <th>점 수</th> <th>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th> <th>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th> <th>기업 신용평가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3.0</td> <td>AAA</td> <td>-</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AA+, AA0, AA-</td> <td>A1</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A+</td> <td>A2+</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A0</td> <td>A20</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A-</td> <td>A2-</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rowspan="3">2.7</td> <td>BBB+</td> <td>A3+</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BBB0</td> <td>A30</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BBB-</td> <td>A3-</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 rowspan="3">2.4</td> <td>BB+, BB0</td> <td>B+</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BB-</td> <td>B0</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B+, B0, B-</td> <td>B-</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2.1</td> <td>CCC+이하</td> <td>C 이하</td> <td>(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td> </tr> <tr> <td>0</td> <td>미제출</td> <td>미제출</td> <td>미제출</td> </tr> </tbody> </table>	점 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3.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7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1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점 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3.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7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1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개발·활용실적	[10] 3	<p>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p> <p>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p> <p>3) 건설기술에 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면, 최대 1점까지만 인정</p> <p>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 기준점수 <table border="1" data-bbox="475 1400 1374 1597">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기준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개발실적</td> <td>건설신기술</td> <td>1.0점/건당</td> </tr> <tr> <td rowspan="2">활용실적</td> <td>건설신기술</td> <td>0.5점/건당</td> </tr> <tr> <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 <td>0.3점/건당</td> </tr> </tbody> </table> ○ 사용실적(건수,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table border="1" data-bbox="491 1686 1374 1910">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5">가 중 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head> <tbody> <tr> <td>실적건수(건)</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r> <tr> <td>실적금액(억원)</td> <td>20이상</td> <td>20미만 18이상</td> <td>18미만 16이상</td> <td>16미만 14이상</td> <td>14미만 12이상</td> </tr> </tbody> </table> <p>※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며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p>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2)투자 실적	7	<p>○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p>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5년미만</td> <td>5년이상 10년미만</td> <td>10년이상 20년미만</td> </tr> <tr> <td>인정률</td> <td>100%</td> <td>80%</td> <td>60%</td> </tr> </table> <p>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p> <p>○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p> <p>-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3%이상</td> <td>3.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 1.0%이상</td> <td>1%미만</td> </tr> <tr> <td>점수</td> <td>7</td> <td>6.8</td> <td>6.6</td> <td>6.4</td> <td>6.2</td> <td>6.0</td> </tr> </table> <p>※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p>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마.	교체 빈도	[5] 3	<p>○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자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자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 (교체빈도율)</p> <p>※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p> <table border="1"> <tr> <td>교체빈도율 (%)</td> <td>5%미만</td> <td>5%이상 10%미만</td> <td>10%이상 15%미만</td> <td>15%이상 20%미만</td> <td>20%이상</td> </tr> <tr> <td>점 수</td> <td>3</td> <td>2.5</td> <td>2</td> <td>1</td> <td>0</td> </tr> </table>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 기술자	2	<p>○ 상주기술자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자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p>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방법												
가 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자	<p>○ 참여기술자가 최근3년내(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p> <p>- 상주기술자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자 : 0.1점 × 가중치</p> <p><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중치</th> <th>1.0</th> <th>0.8</th> <th>0.5</th> </tr> </thead> <tbody> <tr> <td>절감금액</td> <td>10억이상</td> <td>10억미만 ~ 5억이상</td> <td>5억미만 ~ 1억이상</td> </tr> <tr> <td>절감비율</td> <td>1.0%이상</td> <td>1.0%미만 ~ 0.5%이상</td> <td>0.5%미만 ~ 0.1% 이상</td> </tr> </tbody> </table> <p>※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점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p>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이상	10억미만 ~ 5억이상	5억미만 ~ 1억이상	절감비율	1.0%이상	1.0%미만 ~ 0.5%이상	0.5%미만 ~ 0.1% 이상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이상	10억미만 ~ 5억이상	5억미만 ~ 1억이상											
절감비율	1.0%이상	1.0%미만 ~ 0.5%이상	0.5%미만 ~ 0.1% 이상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p>○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 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와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는 감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p> <p>○ 감점적용 점수</p> <p>-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p> <p><부패 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p>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2014. 0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1.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 요령

가. 신청서 표지 <양식1 참조>

나. 건설사업관리 관련 등록증 사본(사업자 등록증,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감리전문회사 등) 등록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등

나. 참여기술자 < 양식 2-1, 2-2참조>

- 참여기술자는 최근 3년간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1주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고,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가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에 대한 사항은 양식 2-1, 양식 2-2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다.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양식 3참조>

- 유사용역실적은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준공 또는 기성)에 의거 평가한다.
(해당 증빙자료 첨부)

라. 신용도 <양식 4참조>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 및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을 받은 내용, 기간(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 : 00일)을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부실벌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가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마. 기술개발, 투자실적,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양식 5참조>

-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대한 특허 등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서(활용실적증명서 포함), 특허증, 최초출원인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한다.

- 타인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투자 실적에 기재하되, 비고란에 표기

바. 교체빈도 <양식 7참조>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한 모든 감리용역을 대상으로 작성할 것

사. 가·감점 <양식 8참조>

아. 자기평가서 <양식 9참조>

아. 건설사업관리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10참조>

2.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분 1부)

건설사업관리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분 1부)

3. 규 격 : A4(210mm×296mm)

4. 지 질 : 백상지(80g/m²)

5.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6. 제 본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7. 기타사항

가.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할 것

나. 제출자료가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 붙임 양식에 대한 각각의 작성요령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하고 작성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기재하지 말 것

라. 평가대상 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경력, 실적,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하며, 그 감리원에 대해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마.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전 사전열람 가능함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평가서를 작성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의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계획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양식 1]

국토교통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진주국토 관내 건설사업관리용역]

2014. 8

(주)○○엔지니어링

(서식 1)

용역 참여 신청서

문서번호 : (Tel : ,Fax: ,담당자 :)

수 신 :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참 조 : 구조물과장

제 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자평가서 제출

「진주국토 관내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자 능력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 붙 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1부 포함) 2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원본1부 포함) 2부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 등록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기타 필요한 서류. 끝.

※ 3.~6. 항목은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 제출

2014년 8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 2)

서 약 서

용역명 : 진주국토 관내 건설사업관리용역

본 업체는 귀 소가 공고한 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허위기재 사항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약속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8월 ○일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본 서약서는 제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제1면에 첨부

(서식 3)

참 여 동 의 서

용역명 : 진주국토 관내 건설사업관리용역

본인은 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 기술자로 참여함을 동의하고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확인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약속하며 본 참여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8월 ○일

소 속 :

직 위 :

참여분야 :

참 여 자 :

(인)

※ 서명은 자필서명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본 동의서는 제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제2면에 첨부

[양식2-1]

1. 참여기술자 현황

구 분	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직위	기술자 등급	기술자격 종 목	비고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평가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평가
○ 기술지원기술자							
- 토목 및 공항							평가
- 토목구조							평가
- 토질 및 기초							평가

※첨부서류 : 1. 참여기술자 동의서

2. 참여기술자 경력 확인서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관련기관 발급)

[양식2-2]

2. 참여기술자 세부경력 현황

가. 자격 및 경력

성명		근무부서			직위	
연령	만세	최종학교	학교		전공 (학위)	
			졸업일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득일		
해당분야 전체 경력		년월		참여분야별 기간		

나. 이력사항

기간	년월	회사	근무부서	직위	비고

다. 해당분야 경력 및 실적

참여기간	사업명	공사종류	기술분야	담당업무	비고 (환산계수)
	발주자	공법	전문분야	직위	
소계 일					100%
소계 일					80%
계 일					

라. 교육훈련

구분	성명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구분	비고
책임					
보조					
기술지원					

마.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구분	성명	자격종목	취득일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분야별 건설사업 책임기술자				
기술지원				

[양식3]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년도	용역명 (용역구분)	도로 구분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 ※ 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지방청, 국토관리사무소),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 정부투자기관,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 도로공사 건설사업 관리부분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년도란에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00일)”로 기재함
- ※ 도로구분란에는 도로명을 기재하고, 고속도로, 광역(특별)시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을 구분하여 작성
- ※ 전면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구분하여 용역구분란에 기재
- ※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 사업개요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을 기재
- ※ 국외에서 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원본 및 국문 번역본)에 주재 국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당해 감리용역의 규모 및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급하는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양식 4]

4. 신 용 도

가. 입찰참가제한기간

업체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				
참여기술자	~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함.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기간은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00일)”로 기재

※ 고의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될 시 신용도에 부여된 점수는 0점 처리

나. 부실벌점 용역업체 및 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지정현황	일시	발주처	해당분야	비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부실벌점 : 점				
참여기술자	부실벌점 : 점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관련협회 발행 부실벌점 현황 첨부

다. 재정상태 건설도

○ 신용평가등급

구 분	신 용 평 가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점 수	

※ 첨부서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 명시)

[양식 5]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1) 신기술

신기술명	내용	지정일	유효기간	실적건수	금액 (백만원)	비고
계	건					

(2) 특허

등록청	특허명	내용	출원일	경과기간	비고 (환산계수)
소계			00건		
소계			00건		
계			00건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할 것

※ 첨부서류 :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증사본 및 등록원부 사본

※ 기술개발실적 중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청이 발급한 “최초출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건설신기술의 경우 보호기간 내에 있고 사용실적(사용실적 증명서 첨부)이 있는 경우에만 기술

나. 투자실적

업 체 명	1년차(년도)			2년차(년도)			3년차(년도)			평 균
	A	B	A/B	A	B	A/B	A	B	A/B	
										(1년차+2년차+3년차)/3 = %

※ A: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첨부서류 : 1.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 공고문) 사본첨부

3.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은 최근3년간 재무제표증명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2,3항은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설도에 첨부된 최근년도 자료
와는 별도로 최근3년간 자료를 추가로 첨부

[양식 6]

6. 교체빈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용역명	용역기간 (전체)	참여직책	성명	발주처	참여기간	비고

※ 작성요령

1.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회사에서 시행한 모든용역을 대상으로 작성.
2. 용역기간은 전체기간을 기재하되 차수계약기간은 기재하지 말것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3. 감리용역 인원교체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근거를 첨부

나. 참여기술자

등급	성명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 감리원							
보조 감리원							
기술지원 (전원)							

※ 작성요령

1.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에 대하여 작성
2.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3.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4.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양식 8]

8. 가·감점 사항

가. 공사비 절감 기여 감리원

성명	공사비 절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청	총공사 부기금액	절감금액	총공사 부기금액 대비 비율	평가점수

※ 증빙서류 첨부

나. 부패행위 관련자

비고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총공사 부기금액 대비 비율)	형사처벌일 (행정처분일)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참여기술자		

[양식 9]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자(책임 : ○○○, 분야별 : ○○○, 기술지원 : ○○○)

1. 항목별 평가점수 【총괄표】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자	계	60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소계	21	
		경력	11	
		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소계	23	
		경력	13	
		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 기술자	소계	10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면접 및 발표	6		
2. 유사용역수행실적		10		
3. 신용도	계	15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7		
	부실별점	5		
	재정상태건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실적	3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계	5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3		
	참여기술자	2		
6. 가점	계	5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자			
7. 감점	부패행위관련자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자	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소계		
		경력		
		실적		
		교육훈련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소계		
		경력		
		실적		
		교육훈련		
	기술지원 기술자	소계		
		등급		
		경력		
		교육훈련		
	면접 및 발표			
2. 유사용역수행실적				
3. 신용도	계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별점			
	재정상태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5. 교체빈도	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참여기술자			
6. 가점	계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자			
7. 감점	부패행위관련자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감리원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 중 자기평가에 반영된 요소는 고무인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표시(“○”표) 하여야하며, 산출근거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양식 10)

건설사업관리 기술 및 업무관리 능력 평가서

[진주국토 관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2014. 8

(주)○○엔지니어링

(반드시 원본에만 회사명 표기)

목 차

제 1 절 자 기 소 개 서

제 2 절 기술능력 평가서

- 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 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수행 실적
- 3) 당해 용역수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사항
- 4) 책임건설사업기술자로서 건설부조리 제로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사항

※ 목차는 상기 이외에 추가 기재하지 말 것

자 기 소 개 서

1. 인적사항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주소		
최종학력	년 학교	학과(졸업,졸업예정,중퇴)
자 격 사 항		
자 격 증	취 득 일 자	비 고

2. 주요경력사항

기간(년월일)	주요경력사항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작성요령>

-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자기소개서 작성시 소속회사 및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상호는 "000"으로 작성

※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는 참여기술자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여야 함.

-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함.
밑줄, 칸 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되며, 최하등급으로 평가.

-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 자신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 건설분야 경력소개
 - 해당용역에 책임(분야별) 건설관리기술자로서의 목표 와 포부

기술능력 평가서

1. 당해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분 야 (역 할)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핵심인력별로 구분하여 제시

* 위 표안의 문서편집 - (신명조, 11포인트, 좌측정렬, 160%)

2. 당해 용역관련 유사사업 수행실적

구분	사 업 명	수행기관	시행청
1			
2			
3			
4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와 같이 기술할 것

1) 사업명 :

2) 사업명 :

3. 당해 용역수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사항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앞에서 제시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 (착안사항 포함)
- * 주요 제인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 (연계방안 등)
 - 현장 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 계획(민원처리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앞에서 제시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 (착안사항 포함)
- * 주요 제인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 (연계방안 등)
 - 현장 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 계획(민원처리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4. 책임건설사업기술자로서 건설부조리 제로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사항(책임건설사업기술자)